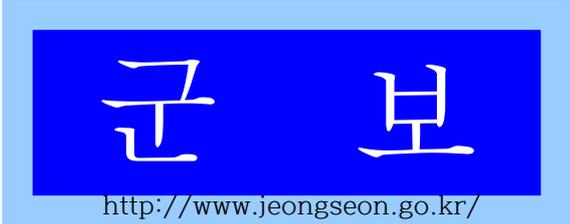




#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509호 2019. 12. 2. (월)

##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748호 정선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2
- 정선군 조례 제2749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5
- 정선군 조례 제2750호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10
- 정선군 조례 제2751호 정선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개설 및 운영 조례.....12
- 정선군 조례 제2752호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16
- 정선군 조례 제2753호 정선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조례.....27
- 정선군 조례 제2754호 정선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29
- 정선군 조례 제2755호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41

□ 발행 : 정선군청 기획실 (전화:560-2213, FAX:560-2592)

# 조 례

제258회 정선군의회(2019. 11. 25.)에서 의결된 정선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48호

## 정선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는 기획업무담당 부서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기획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정선군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제5조(사무직원) ① 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위원회에 별도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하고, 서기는 적극행정 총괄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가. 전담부서 지정(제2조)

나.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제3조)

다.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사무직원 등(제4조~제6조)

제258회 정선군의회(2019. 11. 25.)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49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29명” 을 “634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18명” 을 “623명” 으로 한다.

별표2,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정선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629명</u>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618명</u></p> <p>2. (생 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 ----- ----- <u>634명</u>----- -----.</p> <p>1. ----- <u>623명</u></p> <p>2. (현행과 같음)</p>

[별표 2]

##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 관련)

##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비 율	1% 이내	5% 이내	24% 이내	30% 이내	23% 이내	16% 이상	1%이내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10% 이내	90% 이상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선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634	634				
정무직계	1	1				
군수	1	1				
일반직 계	609	609				
4급	1	1				
4급 . 5급	3	2		1		
5급	27	12	2	3	1	9
6급 이하 계	577	577				
전문경력관 계	1	1				
연구직 계	4	4				
연구관						
연구사	4	4				
지도직 계	20	20				
지도관	2			2		
지도사	18	18				

## □ 제안이유

지적재조사 책임성 강화, 장애등급 폐지 관련 전담인력 확충, 버스공영제 안정적 도입, 건설공사 품질·안전관리 강화,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 확충 등 정부 정책수요 반영 및 지역 현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능 인력 재배치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 □ 주요내용

가. 정선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제2조)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 629명→634명 (증 5명)
  - 집행기관의 총수 : 618명→623명 (증 5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1명 (변동 없음)

나. 정선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일부 조정(별표 2)

- 일반직 비율조정 : 6급(23%이내 → 24%이내), 7급(31%이내 → 30%이내)

다. 정선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의 일부 조정(별표 3)

- 4급·5급 : 본청(2), 직속기관(1) (변동 없음)
- 5급 : 본청(12), 의회(2), 직속기관(3), 사업소(1), 읍면(9) (변동 없음)
- 6급이하 : (572) ⇒ (577) (증 5명)
- 지도직 : (20) ⇒ (20) (변동 없음)

제258회 정선군의회(2019. 11. 25.)에서 의결된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50호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실비변상) ①·② (생략)  <신 설>	제4조(실비변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 원할 수 있다.</u>

 제안이유

이장 임무수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자로서 사기진작 및 행정지원 능력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월 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 지원 조항 신설(제4조제3항)

제258회 정선군의회(2019. 11. 25.)에서 의결된 정선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개설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51호

**정선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개설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에서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정선여행 상품을 홍보하고 군민과 관광객·이용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하여 그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contents)”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서포터즈(supporters)”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취재·수집활동으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군의 각종 여행콘텐츠(이하 “여행콘텐츠”라 한다)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계정개설) ① 군수는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관광객·이용자 등(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신속한 정선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SNS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재할 수 있는 사항은 군의 여행·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등과 같다.

1. 정선여행 정보 및 홍보
2. 문화·예술·체육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
3. 서포터즈의 정선여행 콘텐츠
4. 이용자의 의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군수는 SNS에 최신의 정선여행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이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또는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였을 때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때
3.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였을 때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때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때
6. 욕설·음란물 등 건전하지 않거나 동일 또는 비슷한 내용인 때
7. 여성,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혐오 표현을 한 때
8.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저해, 군민권의 침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

제5조(서포터즈의 운영) ① 군수는 여행콘텐츠 자료의 효과적 수집·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서포터즈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할 경우 그 인원을 증감할 수 있으며 다양한 참여를 위하여 성별 및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다.
2.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해당 활동실적에 대한 군수의 평가결과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3.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축제 및 여행정보 등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여행 소식을 수시로 취재·수집하여 해당 원고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서포터즈를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건강사정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때
3. 사회적 물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때
4. 개인정보 보호 등에 소홀하여 해당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된 때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④ 서포터즈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경비지원) ① 군수는 서포터즈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회의, 지역탐방, 교육 등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서포터즈 및 여행콘텐츠 제작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취재·수집원고 등에 대한 원고료 지급. 다만,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 2. 대외적으로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여행콘텐츠를 활용할 경우에는 그 제작에 정해진 원고료 지급
- 3.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 등 지원

제7조(업무의 대행) ① 군수는 SNS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유지관리 업무의 일부를 해당 수행능력을 갖춘 민간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해당 대행업무 수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하여 정선군의 여행 상품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정선군과 군민, 관광객들 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 군민·관광객 등에게 신속한 정선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SNS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게시물 관리를 통해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도록 규정함. (제3조, 안제4조)
- 나. 여행콘텐츠 자료의 효과적 수집·홍보를 위하여 서포터즈를 위촉·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5조)
- 다. 서포터즈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6조)
- 라. SNS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유지관리 업무의 일부를 해당 수행능력을 갖춘 민간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함. (제7조)

제258회 정선군의회(2019. 11. 25.)에서 의결된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52호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 소속으로 정선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필요한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군수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위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교통 또는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2.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군의원
3.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이 위원(위원)이 된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위원회)의 심의(審議)·의결(議決)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案件)의 당사자(當事者)가 되거나 그 안건(案件)의 당사자(當事者)와 공동권리자(共同權利者) 또는 공동의무자(共同義務者)인 경우
  2. 위원(위원)이 해당 안건(案件)의 당사자(當事者)와 친족(親屬)이거나 친족(親屬)이었던 경우
  3. 위원(위원)이 해당 안건(案件)에 대하여 증언(證言), 진술(陳述), 자문(諮問), 연구(研究), 용역(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위원)이나 위원(위원)이 속한 법인(法人)이 해당 안건(案件) 당사자(當事者)의 대리인(代理人)이거나 대리인(代理人)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當事者)는 위원(위원)에게 공정한 심의(審議)·의결(議決)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事實)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申請)을 할 수 있고, 위원회(위원회)는 의결(議決)로 기피(忌避) 여부를 결정(決定)한다. 이 경우 기피(忌避) 신청(申請)의 대상인 위원(위원)은 그 의결(議決)에 참여(參與)할 수 없다.
- ③ 위원(위원)이 제1항(項) 각 호(號)의 제척(除斥)사유(事由)에 해당(對應)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案件)의 심의(審議)·의결(議決)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郡守)는 위촉위원(委任委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對應)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委員)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身心障礙)로 인하여 직무(職務)를 수행(遂行)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職務)와 관련된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3. 직무(職務)태만(怠慢), 품위손상(品位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事由)로 위원(委員)으로 적합(適格)하지 않(不)다고 인정(認定)되는 경우
4. 위원(委員) 스스로 직무(職務)를 수행(遂行)하기 어렵(難)다는 의사(意思)를 밝히( 밝히)는 경우
5. 제7조제1항(項)에 따른 제척(除斥)사유(事由)에 해당(對應)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委員長)은 위원회(委員會)를 대표(代表)하고, 위원회(委員會)의 업무(業務)를 총괄(總括)한다.

- ② 위원장(委員長)이 부득이한 사유(事由)로 직무(職務)를 수행(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副委員長)이 그 직무(職務)를 대행(代辦)한다.
- ③ 위원장(委員長)과 부위원장(副委員長)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事由)로 직무(職務)를 수행(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委員長)이 미리 지명(指定)한 위원(委員)이 그 직무(職務)를 대행(代辦)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委員會)의 회의(會議)는 군수(郡守) 또는 위원장(委員長)이 필요(必要)하다고 인정(認定)하거나 재적위원(在籍委員) 3

분의 1 이상의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관련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제13조(저상버스 도입 계획) ① 군수는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수행 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 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
3.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의 정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송사업주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송 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저상버스의 운영) ① 군수는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

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1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제18조에 따른 보장구 이용 대상자
2. 임신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18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17조에 따른 특별 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 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 등” 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계약 여부와 이용계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특별 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제19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제18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 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한 기간

제20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 대상자가 제19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9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21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제1항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특별교통수단 운행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2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을 즉시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은 공지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 군 관할구역 내 시내버스요금 이하
- 2.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로 한다.

가. 관내요금 : 관내 시내버스 요금의 2배 이내

나. 관외요금 :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이내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강원도 관할지역과 인접 생활권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 2.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 3.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5.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이동지원센터의 위탁) ①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1. 제22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의 수납
-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 ②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공공기관
    -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 4. 민간단체
  - ③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한다.
  - ④ 군수는 수탁자 선정 시 이용자에게 최대한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차량 콜 시스템을 갖춘 법인·단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2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해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교육)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 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 2. 성희롱 예방교육 및 장애인의 인권
  - 3. 교통약자 서비스
  -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의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의 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에 대해서는 제19조 각 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뒤쪽]

### 신청서 작성 안내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한정하여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정,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과 그 기간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이나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전 궁금한 사항은 정선군청 안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 약 서

본인은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경우 특별교통수단 등의 차량 배차 및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이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제안이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표준조례(안)를 반영하고, 장애인 등급제 폐지('19년 하반기)에 따른 조문, 용어 등을 기준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와 교통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정의, 적용범위 : 제1조 ~ 제3조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관련 규정 : 제4조 ~ 제10조

다.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 제13조 ~ 제14조

라.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운영, 이용대상자 및 이용, 이동지원센터 관련 규정 : 제15조 ~ 제25조

마. 수탁자의 의무, 교육, 예산의 확보 : 제26조 ~ 제28조

바. 등록 신청서 및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258회 정선군의회(2019. 11. 25.)에서 의결된 정선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53호

### 정선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노인복지법」 제26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교통안전 교육) 군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통사고 예방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유도로 교통사고 빈도를 줄여 인적, 물적 피해를 줄여나가 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제3조)

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제4조)

라. 교통안전 교육(제5조)

마. 교통사고 예방 지원(제6조)

제258회 정선군의회(2019. 11. 25.)에서 의결된 정선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54호

**정선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7. “야간경관”이란 야간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 경관요소를 대상으로 빛에 대한 연출계획이 도입된 경관을 말한다.

제6조제3항 중 “있으며, 보완 요구 기간은 영 제2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에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각 호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 4.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 5.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 6.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 7. 지역의 고유한 자연 및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 8.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경관사업의 추진을 위해 경관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제14조제2항 중 “표지를 부착하거나 표창할” 을 “표창 등 포상할” 로 한다.

제16조제2호 중 “옥외광고, 건물, 조경과 관련된 조명의 관리” 를 “경관협정구역의 조명” 으로 하고, 제16조제4호를 같은 조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물의 외부 색채계획에 관한 사항

제5장의 제목 “경관심의 및 자문” 을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의 경관심의” 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시설” 을 “군수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100억원 이상의 사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제외한다.

1. 「정선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건축물
2.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의 준산업단지 안에서의 공장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결정·고시된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의 공장
5. 설계공모 등을 통하여 디자인이 결정된 공공시설물 및 건축물

③제1항에 따라 심의를 마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제외한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경관위원회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
  - 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등이 변경되는 부분이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2. 영 제22조제2호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이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구성·운영) 군수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정선군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1. 「정선군 건축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한 정선군 건축위원회
- 2. 「정선군 군계획 조례」 제57조에 따라 설치한 정선군계획위원회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8조제1호 중 “별표의 사업으로 군수”를 “군수”로 한다.

제31조를 제32조로 하고,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심의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내용에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 1. 「정선군 건축 조례」에 따라 정선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 2. 「정선군 군계획 조례」에 따라 정선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도시계획 시설 및 사업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6. &lt;생략&gt;</p> <p>7.“공공공간”이란 <u>광장, 가로, 수변공간 등 대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u></p> <p>8.“공공시설물”이란 <u>버스승차장, 펜스, 휴지통, 표지판 등 공중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것을 말한다.</u></p> <p>9.“랜드마크”란 <u>인공 또는 자연물로서 지역의 고유한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말한다.</u></p> <p>10.“색채”란 <u>색상을 가진 개별적인 재료의 조화로운 사용을 통하여 형성된 소규모 혹은 광범위한 지역의 이미지를 말한다.</u></p> <p>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② &lt;생략&gt;</p> <p>③ <u>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 기간은 영 제2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u></p>	<p>제2조(정의) ----- -----.</p> <p>1.~6. &lt;현행과 같음&gt;</p> <p>7. “야간경관”이란 <u>야간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 경관요소를 대상으로 빛에 대한 연출계획이 도입된 경관을 말한다.</u></p> <p>&lt;삭제&gt;</p> <p>&lt;삭제&gt;</p> <p>&lt;삭제&gt;</p> <p>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② &lt;현행과 같음&gt;</p> <p>③ ----- ----- ----- ----- 있다.</p>

<신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 1. 경관형성의 미래상 시뮬레이션
- 2.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가. 권역별 경관 계획
  - 나. 경관 유형별 특성화 계획
  - 다.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경관특성화 계획
  - 라. 중점 관리지역 경관 계획
  - 마. 랜드마크 형성 계획
  - 바. 공공시설물 디자인 계획
  - 사. 건축물 디자인 계획
  - 아. 야간경관 계획
  - 자. 색채 계획
  - 차. 가로경관 계획
  - 카. 공원·녹지 계획
  - 타. 역사문화 유적지 경관 계획
  - 파. 광고디자인 계획
  - 하. 예술품 설치 가이드라인 계획
- 3.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할 사항
- 4. 지구단위계획에서 상세 경관계획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에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  
-----  
-----  
-----  
-----  
-----.

-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 4.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 5.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 6.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 7. 지역의 고유한 자연 및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 8.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경관 관리구역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

이 필요한 지역 선정

제9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5. <생략>

<신설>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생략>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를 부착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략>

2. 옥외광고, 건물, 조경과 관련된 조명의 관리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생략>

<신설>

4. <생략>

제5장 경관심의 및 자문

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경관사업계획서) -----  
-----  
-----.

1.~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경관사업 추진을 위해 경관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표창 등 포상할 -----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  
-----  
-----  
-----.

1. <현행과 같음>

2. 경관협정구역의 조명 -----  
-----  
-----

3. <현행과 같음>

4. 건축물의 외부 색채계획에 관한 사항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5장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의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군수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50억 원 이상인 사업
2.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로 시설면적 3,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설비로 바닥에서 높이가 50미터 이상인 시설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 <생략>
- <신설>

경관심의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  
 -----  
 -----  
 ----- 군수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100억원 이상의 사업 -----.

<삭제>

<삭제>

<삭제>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제외한다.

1. 「정선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건축물
2.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

<신설>

제25조(구성·운영) 군수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정선군 경관위원회(이 조례에서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영 제25조, 영 제26조 및

제12호의 준산업단지 안에서의 공장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결정·고시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공장

5. 설계공모 등을 통하여 디자인이 결정된 공공시설물 및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마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제외한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경관위원회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

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등이 변경되는 부분이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2. 영 제22조제2호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이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

제25조(구성·운영) 군수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정선군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가.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다. 그 밖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때

2.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위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27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별표의 사업으로 군수가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정선군 건축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한 정선군 건축위원회

2. 「정선군 군계획 조례」 57조에 따라 설치한 정선군계획위원회

제27조(수당 등) <삭제>

제28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

-----  
-----  
-----

1. 군수 -----  
-----

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생략>

<신설>

제31조 <생략>

-----  
2. <현행과 같음>

제31조(심의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내용에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1. 「정선군 건축 조례」에 따라 정선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2. 「정선군 군계획 조례」에 따라 정선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도시계획 시설 및 사업

제32조 <현행 제31조와 같음>

## [별표] 경관위원회 자문대상(제28조제1호 관련)

구 분	분 류	대 상	
도시계획	도시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대단위 사업	가. 도시지역 1)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이상 2)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이상 3)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이상 나.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이상 다.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이상 라.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이상	
공공 공간	공공문화· 집회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체험시설	
	경관개선을 위한 공공디자인사업	색채, 벽화, 조형물제작 등 단일 공종으로 사업비 1억원을 초과하는 사업	
	옥외광고 정비사업	30개소 이상의 점포가 참여하는 옥외광고 정비사업을 위한 디자인 및 실시설계 사업	
	경관을 고려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연장 200미터 이상	
공공 시설물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공공 시설물	가로등, 도로명판, 보안등, 게시판, 장애인 유도사인, 안내표지, 맨홀, 경계석, 보도블럭, 벤치, 버스쉘터
		문화관광 시설물	관광안내소, 관광안내도, 관광안내표지판, 동상, 기념비, 조형물, 표지판, 기념표석
건축물	건축물	폭15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로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기준에 따라 경관심의 및 경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경관심의 대상 조정 (제23조, 제24조)

○ 사회기반시설 심사대상 사업비 : 50억원 이상 ⇒ 100억원 이상

○ 경관심의 대상건축물 중 위원회 심의 제외조항 신설

나. 경관위원회 구성 및 회의운영 (제25조)

○ 경관위원회 기능 대행 : 건축위원회 / 군계획위원회

다. 심의 의제 조항 신설 (제31조)

라. 별표(경관위원회 자문대상) 삭제

제258회 정선군의회(2019. 11. 25.)에서 의결된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55호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제2항” 을 “제3항” 으로 한다.

제28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참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8조의 제목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 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 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군수는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이미 공고·열람한 군관리계획안의 내용 중 주민의 의견청취 결과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재공고·열람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 외의 사항</p> <p>② (생략)</p>	<p>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제3항-----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등) ①·② (생략)</p> <p>③ 영 제57조제1항제1의2다목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p>	<p>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 -----.</p>

- 1. ~ 3. (생 략)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 및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 설>

- 5. (생 략)
- 제48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1. ~ 15.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6. (현행 제5호와 같음)
- 제48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영 제76조-----  
-----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  
-----.

- 1. ~ 15. (현행과 같음)

□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공고·열람사항 개정(제8조)

- 시행규칙 제3조 개정(1항 신설 등)에 따라 군계획 조례 상 재공고·열람 대상에 개정사항 반영

나. 개발행위 심의대상 명확화(제28조)

- 창고시설과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의 구분으로 개발행위 심의대상 명확화

다. 용도지구 세분 삭제(제48조)

- 강원도 소관사항인 용도지구 세분과 관련하여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에 대한 세분 삭제